

대학문화위원회규정

제정: 2012.10.10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대학문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한다)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대학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·기획·심의·평가
2.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
3. 구성원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문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임명직 위원 5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서울·국제 캠퍼스 부총장이 공동 부위원장이 된다.

제5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홍보처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기)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된 학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부서) 문화홍보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결정사항의 집행 등을 수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 한다.

제9조(의결방법)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대리출석) 위원이 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위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대학문화기획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.